

2022년



## 서비스업

# 산재예방지원 사업 안내



## 목차 contents

### 서비스업

### 산재예방지원

### 사업안내

---

01 '22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03
02 서비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04
03 소규모 서비스업 현장 재해예방 기술지원사업	06
04 안전동행프로그램 구축지원	07
05 안전·보건교육 지원 제도	08
06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지원	09
07 위험성평가 인정	10
08 소규모 사업장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13
09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14
10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15
11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	16
12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17
13 계절별 기후변화 취약근로자 건강보호	20
14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설치·운영	21
15 직업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23
16 콜센터 작업환경 개선지원	24
17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구축지원	25
18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	29
19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30



# 01

## '22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확산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조속한 현장안착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중소기업(50~299인, 제조·기타업종) 컨설팅 지원

\* '22년 사업예산(한시) : 58억원(사업비 56억원, 운영비 2억원)

### 대상 기업



- (업종)제조 및 기타업종, (규모)중소기업(50~299인) 2,240개소
- 컨설팅 신청 기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 기업선정
  - \* ① 고위험 → ② 소규모 (50~150인) → ③ 안전관리자 자체선임 (안전관리 미대행) 順
  - \*\* 제외 : 대기업 2,704개소, 현장지원단 컨설팅 ('21, 400개소), 화학업종 컨설팅 ('22, 500개소)

### 컨설팅 기관



- 수행기관 공모에 응한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문기관 중 심사·선정 (공단 광역본부)
- \* 컨설턴트 자격 경력 기준 : ① 기사 자격증 취득 후 7년 이상 또는 ②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9년 이상 실무경력, (가점) KOSHA-MS 또는 ISO 45001 심사원 자격 보유 시

### 컨설팅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7대 핵심요소) 구축·지원  
예)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장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 매뉴얼·절차서 작성방법 안내 등

### 컨설팅 일정 및 방법

- 컨설팅('22.2~6월), 모니터링(대상 5~10%, 9월), 결과평가(10월)



- 민간전문가(2인 1조 편성), 대상 기업별 4회 이상 방문
- \* 컨설팅 수행 시 기업 본사에서 반드시 참여하고 사업주(CEO) 등 면담 2회 원칙

### 우수사례 발굴



- 우수사례 발굴·확산으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향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에도 적극 활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접수처

주관기관	접수·선정심사 권역	주관기관	접수·선정심사 권역
서울광역본부 (임세훈 대리)	서울, 서울남부, 서울동부, 강원, 강원동부 (광역사업부: 02-6711-2855)	대구광역본부 (남희연 과장)	대구, 대구서부, 경북, 경북동부 (광역사업부: 053-609-0520)
부산광역본부 (김희진 대리)	부산, 경남, 울산, 경남동부 (광역사업부: 051-520-0535)	인천광역본부 (김수정 주임)	인천, 경기, 경기북부, 고양파주, 경기중부, 경기서부, 경기동부 (광역사업부: 032-5100-528)
광주광역본부 (신호중 대리)	광주, 전북, 전북서부, 전남, 전남동부, 제주 (안전인증부: 062-949-8726)	대전세종광역본부 (김형진 대리)	대전·세종, 충남, 충북, 충북북부 (광역사업부: 042-620-5615)

# 02

## 서비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서비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위험설비 임대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사업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정부 지원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 사업 개요

**\* 시행기간**

연중 수시(재원 소진 시 까지)

###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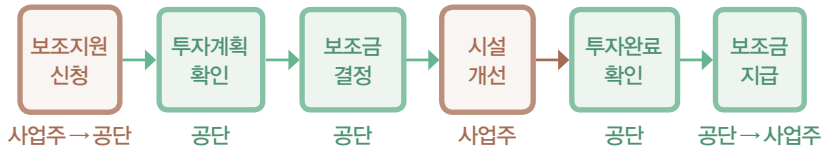
-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단,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주(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방호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절차



### 지원설비

\* 고용부 고사·공단 규칙개정에 따라 지급대상 설비 변경가능

-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 장치
- 건설기계(굴착기 및 로더) 충돌재해예방 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 장치 등)
- 소형타워 안전장치(3톤 미만 무인식) 안전장치(정격하중경고·확인장치, 풍속계 등)
- 화재폭발 예방설비(방폭전기기계기구, 환기팬 및 덕트, 용접작업 불연포 등)
-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
- 고용노동부 감독 및 공단 기술지원에 따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는 시설 및 장비
- 사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참고

## 지원 대상자 선정



### 클린사업 우선 지원 대상 선정

- 신청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사업장의 업종, 규모, 취약 계층 고용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고 인정한 아래의 사업장은 추가 점수 부여

노사문화우수기업, 강소기업, 일학습병행제 인정사업장, NCS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기업, 장애인 우수 사업주 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일터혁신 우수기업, 기업 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산학협력 우수기업, 공생협력 참여한 협력업체(\*21년 ~22년 참여업체), KOSHA-MS 인증, 위험성평가 인정 기업

## 지원금액 및 조건



구분	지원한도액
사망사고등 고위험개선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사업장에 대한 추가지원(각각 최대 1,000만원)은 보조금 지급사업 중 1회만 가능
  - ※당해 연도 안전투자혁신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장은 당해 연도 보조금 신청 대상 제외(단, 필수노동자 근무환경개선 및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은 안전투자혁신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당해 연도 용자금(산재예방시설 자금 용자) 지급 사업장은 당해년도 지원 불가

\* 공단 판단금액은 공단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르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조건이 제한됩니다.

## 사업참여방법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http://clean.kosha.or.kr)) 온라인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별 일선기관(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우편 및 직접 방문 제출

\* 신청서양식: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http://clean.kosha.or.kr)) → 공지사항 → 알림마당 → 서식모음 및 자료실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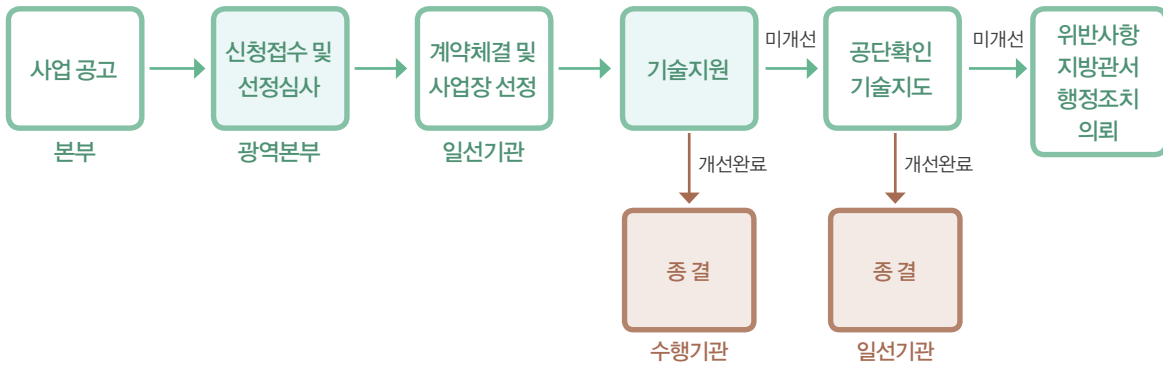
# 03

## 소규모 서비스업 현장 재해예방 기술지원사업

안전보건관리 자원이 부족한 50인 미만 서비스업 사업장 중 사망사고 위험도가 높은 업종(건물관리업, 음식업)을 선정하여 접근성과 수용도가 높은 관련 비영리법인을 통해 사업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재해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

### 사업추진 절차



###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및 음식업

### 기술지원 내용

-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고사망·중상해 사고핵심 위험요인 중심의 기술 지원 및 이행실태 확인
- 사업장내 모든 유해·위험요소 발굴 및 대책 제시(업종별 주요설비는 필수 평가 실시)
- 당해연도 포함한 최근 3년간 발생재해의 원인분석 및 대책 제시
-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확인 및 제도 안내
- 현장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및 맞춤형 재해예방 자료 보급 등

# 04

## 안전동행 프로그램 구축지원

### 안전동행프로그램 구축지원 사업이란?

사업현장(지점, 가맹점 등)을 다수 보유한 본사의 현장에 대한 재해예방활동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현장지원활동 추진 등을 위한 본사의 안전보건시스템이 일정수준이상인 본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지원체계 구축사업장으로 인증함으로써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사업 대상

- 사업현장(지점, 가맹점 등)을 다수 보유한 제조,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본사

### 사업 추진절차



### 소요비용

- 무료

### 사업 추진효과

- 재해 감소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으로 기업인지도 상승

# 05

## 안전·보건교육 지원 제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정기교육을 공단에서 전문강사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사내교육(사업장 지원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사업장 자체교육 시 자체적으로 교육 추진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전문 강사를 지원하는 제도
- **대상**: 교육신청 사업장의 근로자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관리감독자 및 종사자 위주 지원
- **방법**: 해당 분야 전문강사가 현장방문 교육 지원
- **내용**: 업종별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등 사례중심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시간**: 요청시간 (1~2시간)
- **교육비**: 무료
- **신청**: 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www.koshats.or.kr](http://www.koshats.or.kr))

### 체험교육장 운영

공단 안전체험교육장 설치 및 운영 현황(6개소)

- 원청 및 협력업체 대상 체험교육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안전보건교육 지원

연번	명칭	소재지
1	충부	인천 부평구
2	경남	경남 김해시
3	호남	전남 담양군
4	경북	경북 경산시
5	충청	충남 공주시
6	제천	충북 제천시

- 체험교육과정 운영 현황 (4시간 내외, 1회당 25명 내외)
- **안전시설물 체험(3시간)**: 안전대 매달리기, 추락체험, 줄걸이 안전실습, 안전모 충격체험 등 25종
- **가상안전 체험(1시간)**: 입체영상(3D) 시청 및 가상현실을 통한 위험요소 확인 훈련, 재해사례 체험 등 87종
- **VR 안전체험**
  - 1 가상체험 장비(HMD)를 착용하고 타워크레인작업 및 비계 작업 체험
  - 2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건설현장 낙하물 맞음, 떨어짐 사고체험  
→ 가상공간에서 안전사고를 직접 체험



## 06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지원

타업종에 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 시행이 어려운 서비스업 노동자 및 예비근로자를 대상으로 공단과 계약한 외부전문기관의 내실있는 기초 안전·보건교육 지원을 통해 안전의식 수준함양 및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교육대상

- 고위험 필수업종 및 플랫폼 노동자(예비노동자 포함)

- \* ①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환경미화원 등)
- 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요양보호사 등)
- ③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청소 및 경비원 등)

\*\* 배달(퀵서비스업 등), 대리운전

## 교육내용 및 시간

- 3시간/회(공통 1시간, 업종별 2시간)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 개론	1시간
교육 업종별	사고예방과 건강관리	1시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1시간

\*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이수증 교부 및 재발급



## 전액 무료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기관에 일괄지급

# 07

## 위험성평가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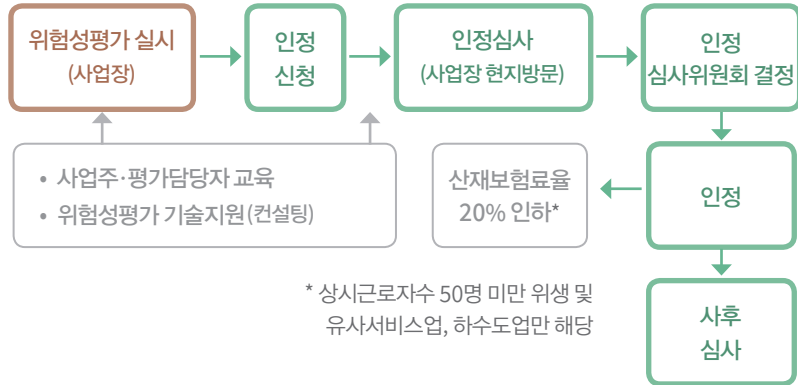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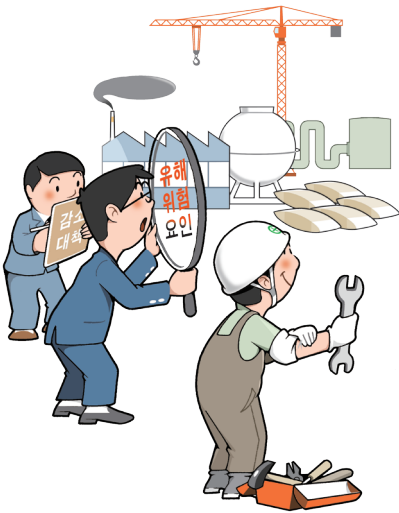
### 위험성평가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고용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 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제외)
  - \*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 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위험성평가 인정절차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http://kras.kosha.or.kr>)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공단에서 인정한 민간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컨설팅 : 근로자가 5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를 컨설팅 해드립니다.
  - \* 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KRAS에 등록된 민간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도 됩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을 시 혜택

-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 시 클린보조금 1천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율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사업장만 해당
- 기술보증기금(KIBO) 보증 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용 100% 적용 및 보증요율 0.2%p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시 기술성 평가점수 우대, 지원 한도가 상향(60억→100억)됩니다.
- 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1.5배 우대, 보증(료) 20% 할인됩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재인정)신청서 및 「위험성평가」 관련 공단 교육·건설팅 신청서는 「위험성평가」 홈페이지(<http://kras.kosha.or.kr>) → 게시판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 [ ]인정 [ ]재인정

사업장명	[ 건설공사명: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위험성평가 담당자		전화번호	- -
		휴대폰번호	- -
소재지	[ - - ]		
소분류업종 (공사기간)	[ . . ~ . . ]	근로자 수 (총 공사금액)	[ 명 억원]
기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의 범위에 포함되는 수급사업장 명단(사업장명, 대표자, 업종, 근로자 수, 연락처 등) 등을 기재(별지로 첨부 가능)		

우리 사업장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였으므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고지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회원가입 및 관리, 개인식별, 본인확인, 만족도 조사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아이디, 성명, 이메일, 연락처(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는 회원가입을 하는 시점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회원탈퇴를 요청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또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 됩니다.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을 할 수 없으며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위험성평가」 [ ] 사업주교육  
[ ] 평가담당자교육  
[ ] 컨설팅(종합, 안전, 보건)

### 지원신청서

사업장명	[ 건설공사명: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 ] *( )는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기재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교육참석자 (업무담당자)	성명: *컨설팅 지원신청서는 업무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	전화번호	- -
		휴대폰번호	- -
소재지	[ - - ]		
소분류업종 (공사기간)	[ . . ~ . . ]	근로자 수 (총 공사금액)	[ 명 억원]

사업장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는「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 ] 사업주교육      지원을 신청합니다.

[ ] 평가담당자교육

[ ] 컨설팅(종합, 안전, 보건)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고지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회원가입 및 관리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아이디,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 선택정보: 주소, 이메일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회원 가입일로부터 회원 탈퇴까지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회원가입은 가능하나 아이디/비밀번호 확인 등의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회원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는 미입력시 회원가입 불가)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08

## 소규모 사업장 배치전·특수건강 진단 비용지원

배치전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 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사업주가 건강진단 지정기관에서 화학물질, 소음, 분진, 야간작업등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종사근로자의건강을보호·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 비용지원 목적

- 화학물질, 소음, 분진, 야간작업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배치전·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업무상 질병 감소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배치전·특수건강진단 1, 2차 검진 비용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 대상



\* 재원 소진 시에는 신청 및 지원을 종료 하므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빠른 시일 내에 배치전·특수건강진단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화학물질, 소음, 분진,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해 배치전·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 <총 고용보험 피보험자 30인 미만>
- 건설현장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 되는 업무에 종사 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 석면 등 건강관리카드 소지자
- 야간작업(2종)에 종사하는 공동주택의 경비 및 청소원(규모 상관없음)

###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81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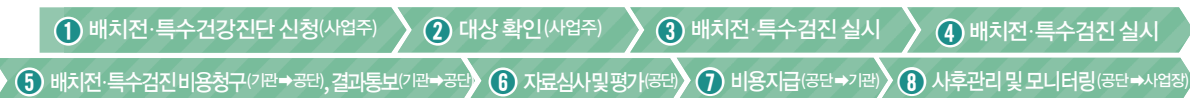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22
  - 벤젠, 톨루엔, 메탄올 등 유기화합물 109종 - 구리, 납, 수은 등 금속류 20종
  - 무수초산, 질산 등 산 및 알카리류 8종 - 금속가공유 1종 - 허가 대상 유해물질 12종
  - 불소, 브롬, 산화에틸렌 등 가스 상태 물질류 14종 - 소음, 진동 등 물리적인자 8종
  - 곡물분진, 광물성 분진, 석면 분진 등 분진 7종 - 야간작업 2종

대상 유해인자	주기	대상 유해인자	주기
• 벤젠	6개월	• N, N-디메틸아세트아미드	6개월
• 석면, 면분진	12개월	• 디메틸포름아미드	6개월
• 광물성분진	24개월	• 1, 1, 2, 2-테트라클로로에탄	6개월
•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24개월	• 사염화탄소	6개월
		• 아크릴로니트릴	6개월
		• 염화비닐	6개월
		• 상기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 모든 대상 유해인자	12개월

### 지원 신청 및 대상 확인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 사업소개 또는 자주 찾는 항목 → 건강디딤돌 → 사업신청 → 30인 미만 사업장
- \* 신청 후 「신청 결과 확인」에서 대상 여부 확인

#### 절차



# 09

##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작업환경측정이란?

사업주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비용지원 목적

- 작업환경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

### 지원 대상

\* 2022년 비용지원 신청절차에 따라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한해서 비용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125조에 따라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보유한 사업장  
 <총 고용보험 피보험자 30인 미만>
  - 「산업안전보건법」 125조,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관련 별표21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

### 지원 금액

 **265 억원**  
2022년 예산

\* 재원 소진 시에는 신청 및 지원을 종료 하므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빠른 시일 내에 작업환경측정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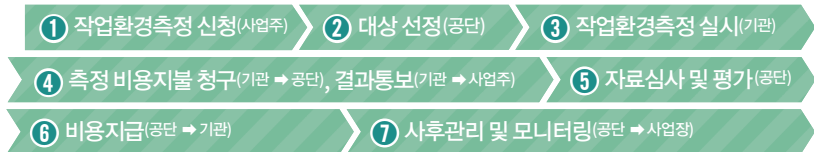
※ 공단 산정금액 기준

- 기존 측정사업장
  - 사업장당 측정비용의 70%를 지원 - 최대 지원 가능 금액: 40만원
- 신규 측정사업장
  - 측정금액 전액지원(최대 100만원 까지)
  - \* 신규사업장 : 과거 3년동안('19~'21년)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

### 지원 신청 및 대상 확인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또는 자주 찾는 항목 → 건강디딤돌 → 사업신청 → 30인 미만 사업장
  - 신청 후 「신청 결과 확인」에서 대상 여부 확인

#### 절차



# 10

##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코로나로 인한 과도한 업무증가,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일하는 필수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직종별 질병특성을 반영한 건강진단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환경미화원(30인 미만 사업장),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온라인 배송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운전자

### 지원내용



- 직종별 업무특성에 특화된 건강진단 실시비용의 80%를 지원(자부담금 20%)

※ 표적질환 : 환경미화원(폐암, 근골격계질환), 택배기사·배달종사자·대리운전자·온라인배송기사·화물차주(뇌심혈관질환), 건설기계운전자(호흡기계질환)

### 지원절차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신청  
※ 경로 : 사업소개 또는 자주 찾는 메뉴 → 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 사업신청

#### 절차

- 1 지원대상 선정(공단)
- 2 지원대상 확인
- 3 건강진단실시(특수건강진단기관)
- 4 검진결과 통보(기관 → 근로자)
- 5 비용청구(지원금: 기관 → 공단, 자부담금: 기관 → 사업주 등)
- 6 자료심사 및 평가(공단)
- 7 지원금 지급(공단 → 기관)
- 8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공단)

# 11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제도권 신규유입 및 다발업종 사업장에 유해요인조사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통증호소자 관리로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없거나 최근 3년 이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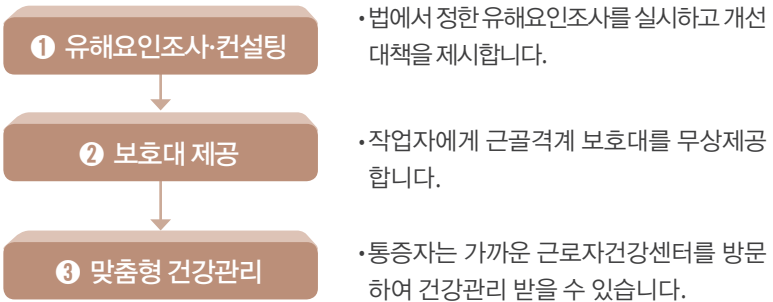
-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의 근골격계질환 취약 사업장

- ①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가 부과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①택배기사, ②가전제품 설치수리원, ③소프트웨어기술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
- ② 환경미화(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한함), 마트(편의점 제외) 사업장
- ③ 근골격계질환 다발업종으로 지원안내 받은 사업장

### 지원내용



- 산업보건 전문가가 방문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19.12.26., '21.11.19.)으로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은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증상자 의학적 조치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접수처	전화번호	관할 지역
서울광역본부	02-6711-2829	서울특별시, 강원도(철원군 제외), 경기도 가평군
부산광역본부	051-520-0505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광역본부	062-949-8753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본부	053-609-054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인천광역본부	032-510-0561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대전세종광역본부	042-620-5634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지역본부	031-259-7179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안성시,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구리시, 안산시, 시흥시,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및 양평군



# 12

##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등) 발병위험이 있는 노동자에게 뇌·심혈관계 중심의 건강진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종사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특수 형태근로종사자 포함)로 아래 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

- ※ 지원불가 : 뇌혈관, 심혈관 이상으로 과거 뇌, 심장 수술(시술)을 받았거나 현재 치료 중인 자
- ※ 지원제외 : ① 사업주, ② 상호출자제한 등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공공단체에서 종사하는 자

- ① 아래의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자
  - ①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 ② 공복혈당 126mg/dL 이상
  - ③ 총콜레스테롤≥240mg/dL 또는 LDL≥160mg/dL 또는 중성지방≥200mg/dL
  - ④ 비만(BMI≥30) 또는 복부비만(남≥90cm, 여≥85cm)
- ②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 ③ 일반검진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 이상인 자
- ④ 근로자건강센터, 의료기관 의사가 상담·진료 중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 ⑤ 만 55세 이상

### 검사 항목 및 지원금액

- 아래 검사항목에 대한 건강진단비용의 80%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합니다.

• 기본검사: 자부담금 42,600원(뇌·심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필수 검사항목으로 구성)

구분	진찰	계측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정밀검사	
검사 항목	① 문진 및 의사상담	① 신체계측 (키, 몸무게, 허리둘레)	① 공복혈당	⑥ LDL콜레스테롤	① 요단백	① 경동맥 초음파
	②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② 혈압	② 당화혈색 (HbA1c)	⑦ 혈청 크레아티닌	② 미량알부민	② 관상동맥 비조영 CT (석회화 점수)
			③ 총콜레스테롤	⑧ 신사구체여과율 (e-GFR)		③ 심전도
			④ HDL콜레스테롤	⑨ 호모시스테인		
			⑤ 트리글리 세라이드			

※ 상기 검사항목의 건강진단비용은 213,000원으로 지원금 170,400원(80%)은 공단이 부담

• 선택검사: 신청자 중 아래 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시 정밀검사 추가 가능 <희망자에 한함>

(지원조건) ① 만55세 이상, ② 총콜레스테롤≥310mg/dL, ③ 혈압≥180/110mmHg, ④ 당뇨(공복혈당≥126mg/dL 또는 당화혈색소≥6.5%), ⑤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고위험 이상, ⑥ 일반건강검진의 심뇌혈관질환 발병위험도 5% 이상

(자부담금) ① 심장초음파 2.5만원, ② 관상동맥 조영CT(기본검사 비조영CT 대체) 2.5만원, ③ 뇌혈관MRA 4만원

※ 선택검사를 희망하시는 경우, 해당 검사항목이 가능한 검진기관을 확인하신 후 신청 바랍니다.

- 비용지불 : 신청인은 자기부담금 20%만 건강진단 당일에 해당기관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 사후관리

### 건강상담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10회 (주기 1개월 이상)

-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는 건강진단기관을 방문하여 주기적으로 전문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부담금 없으며, 건강상담 이외에 질병치료, 처방 등을 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함

### 추가검사 정밀검사 비용의 80%

- 건강진단 결과, 뇌심혈관질환 의심 등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인정한 경우

## 신청방법

### 온라인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메인화면

- ① **바로가기** 자주 찾는 메뉴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클릭 또는
- ② **신청경로** 「사업소개-재정지원-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클릭

※ 신청자: 사업주(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첨부) 또는 노동자(SMS 본인인증) 모두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후 공단에 FAX 송부(052-702-9507) 또는 건강진단기관에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온라인 신청사이트)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심층건강진단 실시기관

&lt;'22.2.10.기준&gt;

지역	검진기관명	연락처	지역	검진기관명	연락처
서울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6	02-2038-6115	전북	(사)한국건강관리협회전북지부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40	063-259-8800
서울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02-2140-6010	전북	의료법인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전주시 완산구 한두평 3길 13	063-259-8800
서울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78	02-3290-9800	제주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제주시 연북로 111	064-740-0237
서울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35	02-2600-2005	제주	의료법인 해인의료재단 한국병원 제주시 서광로 193	064-750-0000
서울	서울DMC건강의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79	070-5138-5532	대전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11	042-530-2100
서울	독일하트의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92	02-334-1008-9	충북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31	043-299-5746
서울	재단법인 미래의료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3	02-540-0001	대구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 23	053-341-9010
서울	한국의학연구소(KMI) 본원 검진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54	02-3702-9000	대구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16	053-757-0500
서울	한국의학연구소(KMI) 여의도 검진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4	02-368-8114	대구	한국의학연구소(KMI) 대구 검진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11	053-430-5000
서울	한국의학연구소(KMI) 강남 검진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1	02-3496-3300	경북	구미강동병원 구미시 인동20길 46	054-478-9591
경기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57	031-250-5800	경북	(의)안동병원 안동시 양실로 11	054-840-1656
경기	한국의학연구소(KMI) 수원 검진센터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32	031-231-0114	부산	동아대학교의료원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051-240-5310
경기	의료법인 명인의료재단 화흥병원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90번길 98	031-8021-6947	부산	이샘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12	051-631-5225
경기	의료법인 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 김포시 김포한강3로 283	070-5083-1819	부산	영도병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85	051-419-7757
인천	나은병원 인천광역시 서구 신진말로 28번길 43	1661-0099	부산	좋은강안병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	051-610-9993
인천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	032-890-2861	부산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 145	051-553-9701
인천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500	032-890-8700	부산	부산미래IFC의원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051-710-2000
인천	현대유비스병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503	032-890-5713	부산	한국의학연구소(KMI) 부산 검진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14	051-810-1500
강원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지부 춘천시 남춘로 50	033-260-0800	울산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울산광역시 중구 변영로 360	052-296-5671
강원	속초보광병원 속초시 중앙로 11	033-639-8904	경남	경희의료원교육협력 중앙병원 김해시 분성로 94-8	055-330-6087
광주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32	062-610-3147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055-360-1280
광주	한국의학연구소(KMI) 광주 검진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062-602-2100	경남	(사)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107	055-259-0100
전남	여수중앙병원 여수시 둔덕2길 6-3	061-644-9000			

\* 건강진단기관은 향후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신청사이트 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13

## 계절별 기후변화 취약근로자 건강보호

옥내·외 계절별 기후변화(미세먼지, 폭염, 한파)에 취약한 사업장에 근로자 보호 기본수칙 이행지도 및 예방용품 지원하여 계절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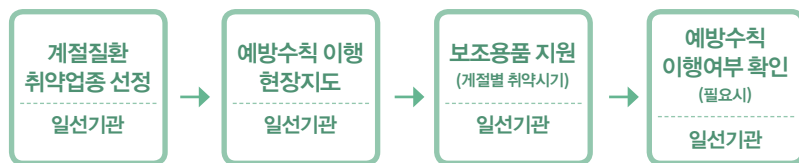
### 사업목표

- 대상 : 기후변화 취약근로자 보유사업장\*  
\* 건설현장, 환경미화업 등 옥내·외 작업 사업장
- 사업물량 : 2,500회  
- 옥외노동자 마스크 지원 : 285만개

### 추진내용

- 여름·겨울철 기후대응 계절질환 예방조치 자율이행 지도  
- 폭염(6월~9월), 한파(11월~2월)기간 계절질환 3대 예방수칙 준수 확인  
※ 폭염대응 예방설비(이동식에어컨, 그늘막) 보조지원사업 연계  
- 사업장·근로자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옥외·옥내 작업장 폭염 예방 가이드 및 특보상황 전파
- 기후대응 취약시기\* 보조용품 지원 및 집중 지도  
- 계절별 보조용품(Cool-Warm-Kit) 제작하여 취약시기 집중배포  
\* 여름(7월 중순~8월), 겨울(12월 중순~1월)
- 미세먼지 노출 옥외노동자 미세먼지 대응 마스크 배포  
-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 및 올바른 마스크 착용 지도  
※공단사업과 민간기관 마스크 배포용역사업 등을 통해 배포

### 추진절차



## 14

근로자  
건강센터(분소)  
설치·운영

근로자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건강센터(분소)”의 설치·운영으로 근로자 질병상담 등 다양한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합니다.

## 센터(분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서비스  
내용

- 근로자건강(질병)상담실 운영(근로자건강에 대한 모든 상담,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상담, 직무스트레스 상담, 업무 적합성 평가 등)
- 직업환경(작업관리) 상담실 운영
- 근골격계질환 예방실 운영
- 뇌·심혈관질환 예방실 운영
- 심리상담실 운영



## 일하는 사람들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간호사, 산업위생 전문가, 근골격계질환 전문가, 직무스트레스 상담 전문가 등 직업건강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운영

## 운영 시간

\* 이용요금: 전액 무료

- 센터별 상이(탄력적 운영)  
\* 희망하시는 사업장은 단체 예약 시 이동건강상담 및 집단 상담도 가능합니다.

## 이용 가능한 장소

- 전국 23개 센터 및 21개 분소 운영

센터(분소)명	소재지	홈페이지	전화번호
경기서부 근로자건강센터 (군포분소)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7 KT시화지점 3층 (군포분소)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www.gswwhc.or.kr	031-364-7680 (031-8086-7195)
인천 근로자건강센터 (인천부평분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4층 (인천부평분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지하1층 116호	www.icwhc.or.kr	032-260-3661 (032-528-1155)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광주광산분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133-8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광주광산분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184-1 103/104호	www.gjwhc.or.kr	062-713-5190 062-713-5199
대구 근로자건강센터 (서대구분소) (대구달성분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대구비즈니스센터 7층 (서대구분소)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21길 33 (대구달성분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	www.dgwhc.or.kr	053-585-5501 (053-584-3406) (053-615-6497)
경남 근로자건강센터 (창원분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창원SK테크노파크 2동 11층 (창원분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122호	www.knwhc.or.kr	055-713-2400 (070-4270-0240)
서울 근로자건강센터 (서울중구분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BYC하이시티 2층 (서울중구분소) 서울 중구 퇴계로 197 충무빌딩 302호	www.suwhc.or.kr	02-6947-5700 (02-2268-6497)

센터(분소)명	소재지	홈페이지	전화번호
경기동부 근로자건강센터 (성남분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 8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12층 (성남분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0 삼한하이텍스 A동 127호	<a href="http://www.gdwhc.or.kr">www.gdwhc.or.kr</a>	031-739-9301 (031-698-2990)
울산 근로자건강센터 (울산북구분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90 (울산북구분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0	<a href="http://www.uswhc.or.kr">www.uswhc.or.kr</a>	052-201-9960 (052-288-7772)
부천 근로자건강센터 (김포양촌분소) (김포고촌분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 부천테크노파크 1단지 관리동 3층 (김포양촌분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 메카존 나동 243호 (김포고촌분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욱로58번길 105-1유호빌딩 2층 204호	<a href="http://www.bcwhc.or.kr">www.bcwhc.or.kr</a>	032-329-9161 (031-999-7602) (031-998-9165)
충북 근로자건강센터	충북 청주시 오창읍 양청송대길 10, 5층	<a href="http://www.cbwhc.or.kr">www.cbwhc.or.kr</a>	043-218-9415
충남 근로자건강센터 (아산분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35 YG빌딩 2층 (아산분소)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82 G-플레이스 405호	<a href="http://www.cnlhc.or.kr">www.cnlhc.or.kr</a>	041-522-8993 (041-547-7993)
대전 근로자건강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한신에스메카 1층)	<a href="http://www.tjwhc.or.kr">www.tjwhc.or.kr</a>	042-936-9571
부산 근로자건강센터 (양산분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벽산디지털밸리 1층 (양산분소) 경상남도 양산시 대평들3길 2 1층	<a href="http://www.bswhc.or.kr">www.bswhc.or.kr</a>	051-329-7300 (055-385-7301)
경북북부 근로자건강센터 (구미분소)	경북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24 구미근로자문화센터 1층 (구미분소)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비즈니스지원센터 213호	<a href="http://www.gbwhc.or.kr">www.gbwhc.or.kr</a>	054-475-2511 (054-465-2511)
경기남부 근로자건강센터 (평택분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디지털엠펜파이어빌딩 C동 2층 (평택분소)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산단로 58 청은상가1층	<a href="http://www.gnwhc.or.kr">www.gnwhc.or.kr</a>	031-205-8960 (031-663-8953)
전남동부 근로자건강센터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23 YM빌딩 3층	<a href="http://www.jdwhc.or.kr">www.jdwhc.or.kr</a>	061-692-9640
전남서부 근로자건강센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	<a href="http://www.jnswhc.or.kr">www.jnswhc.or.kr</a>	061-462-2900
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 (서울성동분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 A-1406호 (서울성동분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591 서울숲 A타워 308호	<a href="http://www.sgwhc.or.kr">www.sgwhc.or.kr</a>	02-2093-2650 (02-6077-7500)
경산 근로자건강센터 (영천분소)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 근로자복지회관 2층 (영천분소) 경북 영천시 금안로 63 영천상공회의소 1층	<a href="http://www.gsswhc.or.kr">www.gsswhc.or.kr</a>	053-853-8579 (054-338-8541)
전주 근로자건강센터 (완주분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KT팔복지사 2층 (완주분소) 전북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50-15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a href="http://www.jjwhc.or.kr">www.jjwhc.or.kr</a>	063-211-9988 (063-262-7733)
강원 근로자건강센터 (춘천분소)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604호 (춘천분소)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길 24 퇴계농공단지	<a href="http://www.강원근로자건강센터.kr">www.강원근로자건강센터.kr</a>	033-745-7289 (033-262-2788)
제주 근로자건강센터 (연동분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연동분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길 9 제주 근로자종합복지관1층	<a href="http://www.jejuwhc.or.kr">www.jejuwhc.or.kr</a>	064-752-8961 (064-745-8961)
경기북부 근로자건강센터 (남양주분소)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준길 82 검준공단지원센터 4층 (남양주분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산단로 70번길 6	<a href="http://www.ggbbwhc.or.kr">www.ggbbwhc.or.kr</a>	031-858-9030 (031-572-9032)

# 15

## 직업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대형산업사고, 동료의 자살,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성폭행 등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노동자가 외상후 스트레스(트라우마) 증상을 극복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서비스 내용

- 직·간접 사고 피해자의 심리 안정화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
- 일상·직장 생활 복귀 도모
- 사고 충격에 따른 심리안정 지속 관리
- 필요 시 전문적인 치료 연계

### 일하는 사람들

-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들로 구성·운영

### 운영 시간

- 센터별 상이(탄력적 운영)

### 이용 가능한 장소

- 전국 13개 센터 운영

센터명	소재지	담당지역	전화번호
인천직업트라우마센터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인천근로자건강센터 내)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북부)	032-818-3660
부천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 (부천직업트라우마센터 내)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 서울특별시(남부)	032-329-9565
경기서부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7 (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 내)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031-364-7603
경기동부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8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 내)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강원도 원주시, 강릉시, 평창군 등 남부지역	031-739-9301
대전직업트라우마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대전근로자건강센터 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전역	042-936-9573
대구직업트라우마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대구근로자건강센터 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역	070-8827-4853
광주직업트라우마센터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133-8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역	062-713-5185
경남직업트라우마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경남근로자건강센터 내)	경상남도 전역	055-713-2401
경기북부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준길 82 (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 내)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파주시, 양주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춘천시, 홍천군, 횡성군 등 북부지역	070-4139-2607
울산직업트라우마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90(울산근로자건강센터 내)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052-201-9963
전주직업트라우마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전주근로자건강센터 내)	전라북도 전역	063-211-9988
제주직업트라우마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양로 165(제주근로자건강센터 내)	제주도 전역	064-752-8961
충남직업트라우마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35 (충남근로자건강센터 내)	충청남도 전역	041-566-8993

# 16

## 콜센터 작업환경 개선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가중(고객응대) 및 감염우려가 높은 콜센터에 작업 환경 개선지원을 통해 콜센터 상담사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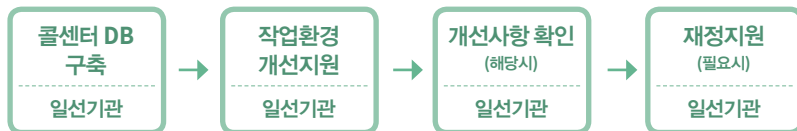
### 사업목표

- 대상  
- 콜센터 사업장(신규, 고객응대 보호조치 미흡, 감염병 우려 등)
- 사업물량 : 1,500회

### 추진내용

- 콜센터 DB 구축  
-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활용하여 지역별 콜센터 사업장 현황 최신화
- 개선지원  
- 콜센터 상담사 건강보호조치(고객응대 보호조치, 직무스트레스 관리, 정신건강 보호조치등) 현장 작동성 강화 지도  
- 3密 환경 감염병 예방·대응을 위한 방역점검 및 개선지도
- 개선확인  
- 개선지원 결과, 위험수준이 미흡한 사업장은 확인 기술지원 실시

### 추진절차



### 사업효과 향상방안

- 콜센터 운영업체 본사 협조를 통한 DB 최신화 및 자율개선 유도
- 고객응대 보호조치 미조치, 현장작동 불능 사업장은 지방관서에 보고 하여 개선조치 실시
- 감염병 방역조치 미흡 사업장은 지자체 통보



# 17

## 안전보건경영 시스템(KOSHA-MS) 구축지원

사업주가 자율경영방침에 따라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실행지침과 기준을 규정화하여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계획(실행)에 대한 자체평가 후, 개선토록 하는 시스템으로 재해예방과 기업손실감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율안전보건 체계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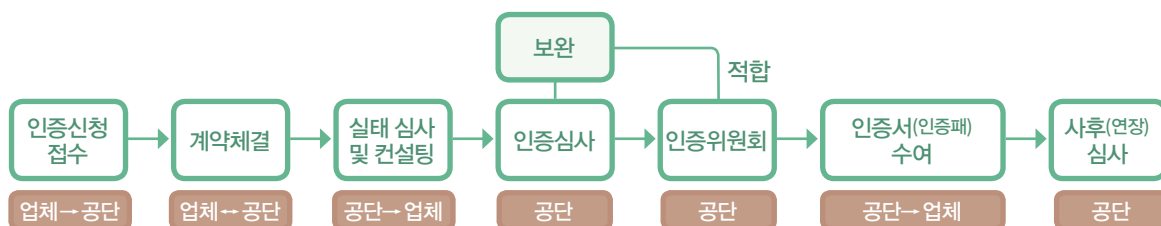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개요

\*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조건과 국제표준(ISO 45001) 기준 체계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권고를 반영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안전보건경영 체제로 인증사업장은 매년 사후/연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이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란 사업장의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방침에 안전 보건정책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 실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하며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가 검토하는 일련의 순환과정의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을 말합니다.

### 업무추진 절차



### 인증기준

#### 「안전보건경영체제」분야

- 조직의 상황(조직상황이해, 요구사항, 적용범위, 시스템),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 (리더십과 의지표명, 안전보건방침, 조직의 역할책임 및 권한,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 계획수립(위험성평가,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검토, 안전보건목표, 안전보건목표추진 계획), 지원(자원, 역량/적격성, 인식,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문서화, 문서관리, 기록), 실행(운영계획 및 관리,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성과평가(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평가, 내부심사, 경영자 검토), 개선(시정조치, 지속적개선)

#### 「안전보건활동분야」(해당할 경우에만 적용)

- 작업장의 안전조치, 중량물·운반기계 안전조치,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떨어짐·무너짐에 의한 위험방지, 안전검사 실시,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 예방활동, 전기재해 예방활동 지원, 쾌적한 작업환경유지활동,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활동, 협력업체의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관계자의 역할과 활동, 산업재해조사 활동, 무재해운동의 자율적 추진 및 운영



## 인증기준

### 「안전보건경영관계자 면담」 분야

- ① 경영자, ② 중간관리자(팀장, 부·과장, 대리), ③ 현장관리자(기사, 직장, 조반장), ④ 현장근로자, ⑤ 안전·보건관리자, 담당자, 조정자, ⑥ 협력업체 관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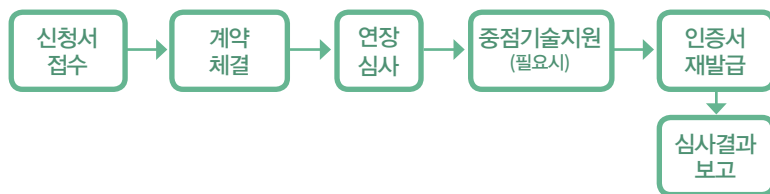
#### 신규인증심사



#### 사후심사



#### 연장심사



## 인증효과



- 인증사업장 재해감소 효과 입증(인증사업장 재해분석 결과 제조업 평균재해율의 50% 수준 유지)
- 효율적인 안전·보건활동으로 작업환경 및 근로복지 개선
- 각종 법규 및 규제에 대응하여 벌금 및 과태료 절감
- 협력업체 안전·보건활동 지원으로 공생협력 강화
- 주기적 예방점검을 통한 장비, 설비의 가동율 향상으로 생산성 증대
- 사고손실 위험 감소로 인한 기업가치 제고(기업인수시 지적재산권으로 인정)
- 안전보건방침에 적합한지를 고객 등 이해관계자에게 입증
- 기업 이미지 개선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불신 해소

## 지원정책(혜택)

- 심사비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인정 사업장,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사업장의 사내·외 협력업체, 공정안전보고서 P등급 사업장, 공동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은 후 KOSHA-MS 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장의 실태심사비용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기술지도 A 등급 사업장과 A등급 사업장의 사내·외 협력업체는 다음연도 심사비의 1/2
  - 공동인증기관과 공동인증을 신청한 경우, [별표 5] 심사일수 기준의 1/2만 산정하되 공동인증 심사일수는 최소 1인·일을 적용
  -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기업은 신규 인증 신청에 따른 실태심사·인증심사·사후심사(첫번째 연장심사 전까지에 한함) 비용 전부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등급 평가시 가점 부여
-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컨설팅비용 지원
-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인증사후 심사(첫번째 연장심사 전까지에 한함) 심사비의 1/2



## 사업장 현황 조사표

• 일반현황

사업자명	_____			위험성평가기법	_____
사업장 규모	• 상시 근로자: _____ 명 (교대작업: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비정규 근로자: _____ 명,    • 협력업체: _____ 개사( _____ 명)				
모기업 협력업체 여부	<input type="checkbox"/> 모기업 명칭: _____ <input type="checkbox"/> 사내 협력업체수: _____ 개소 <input type="checkbox"/>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수: _____ 명				
다른 인증 여부	<input type="checkbox"/> ISO 9001 <input type="checkbox"/> ISO 14001 <input type="checkbox"/> ISO 45001 <input type="checkbox"/> OHSAS 18001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				
컨설팅 여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컨설팅 기관: _____ )				
안전관리현황	<input type="checkbox"/> 선임 안전관리자(성명): _____ <input type="checkbox"/> 선임 보건관리자(성명): _____ <input type="checkbox"/> 안전보건관리담당자(성명): _____ <input type="checkbox"/> 대행 안전관리전문기관: _____ <input type="checkbox"/> 대행 보건관리전문기관: _____				
최근 3년간 재해현황 (자체조사)	_____ 년	_____ 년	_____ 년		
	재해자 수(사망자수)	재해자 수(사망자수)	재해자 수(사망자수)		
	_____ 명	_____ 명	_____ 명		
산재원인과 대책	_____				
업무담당자	• 부서명: _____ • 휴대폰: _____	• 직책: _____ • E-mail: _____	• 성명: _____	• TEL: _____ • FAX: _____	

• 주요 공정 및 유해·위험성(사업장 보유자료 대체 제출가능)

공정명	주 작업내용	유해 및 위험설비(중요 대상)	잠재위험성(협착·충돌·전도·감전 등)

\* 공정이 복잡한 경우는 주요 공정에 한하여 간략히 작성토록하며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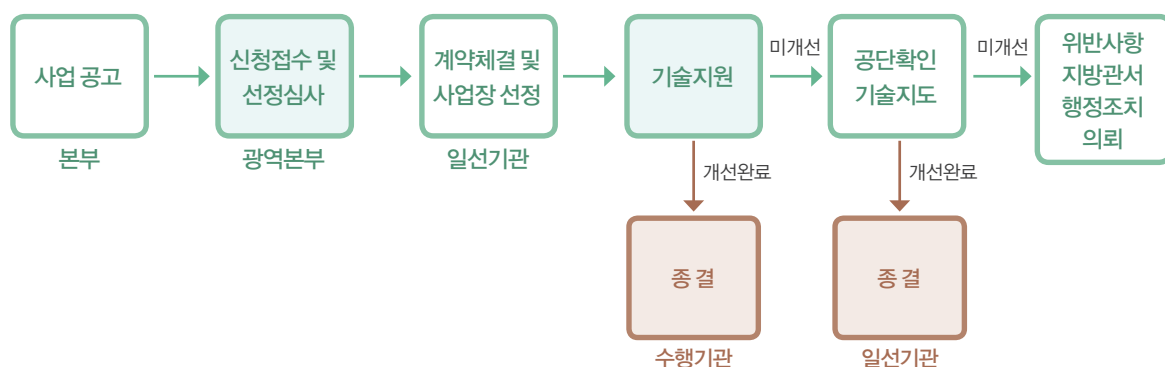
# 18

##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등 자율 보건관리 역량이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 기술지원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 등을 지원함으로써 업무상질병 및 질병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사업추진 절차



###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공사금액 1~800억 건설업 포함)

### 기술지원 내용

- 사업장 특성 및 핵심 위험요인에 따라 테마별\* 기술지원 실시
  - \* ① 작업환경관리 - 화학물질 중독예방, 폭염, 국소배기장치 관리 등
  - ② 작업관리 - 질식재해예방, 근골예방
  - ③ 직업건강관리 - 감정노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기본요소 안내 및 지원
- 재해발생 취약요인 및 보건관리 기본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방안 제시
- 사업장 내 발생 재해 원인분석 및 대책 제시
- 현장 맞춤형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및 건강증진 자료 보급 등

# 19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모기업이 협력업체와 함께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협력업체에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활동 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프로그램 개요



### 참여 대상

- **대상** : 근로자 50명(사내협력업체 근로자포함) 이상 모기업\* 및 협력업체  
- 사내 협력업체와 유해·위험물질 제조·사용 또는 정비·보수 등 고위험작업 사업  
협력업체는 모두 참여

#### 「유해·위험물질 제조·사용 사업장」의 범위

- 1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물질(51종)을 규정량 미만으로 제조·사용하여 PSM 비대상으로 분류되는 사업장
- 2 고독성(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78종) 제조·사용 사업장
- 3 최근 10년간 직업병 발생 빈도가 높은 삼산화안티몬, 클로로포름, 시안화수소, 메틸알코올,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제조·사용 사업장

- **업종** : 전 업종\*

\* 다만, 조선업 및 건설업 사업장 제외

- **선정** : 사업대상 우선선정 기준을 참고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의하여 선정

### 프로그램 접수 및 심사

- **참여 신청기간** : '22. 2. 21(월) ~ 2. 28(월)
- **접수처** : 모기업 소재지 관할공단 광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지사
- **심사 및 승인** : '22. 3. 10.(목)까지 완료

## 프로그램 개요

※ 비교 : 절대평가 결과 90점 이상은 A등급, 90점 미만~80점 이상은 B등급, 80점 미만은 C등급

## 참여 사업장에 대한 등급평가 및 혜택

평가등급	평가등급별 혜택	적용 시기	적용 시기	
			모기업	협력업체
A등급 (상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기감독 일부 유예 및 연기요청권(90일)</li> <li>정부포상 우대</li> <li>KOSHA 18001 및 KOSHA-MS 사후·연장 심사비 1/2 감면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자체감독 대상 사업장</li> </ul>	참여 다음 연도	○	○
A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포상(산재예방 유공) 우대</li> <li>KOSHA 18001 및 KOSHA-MS 사후·연장 심사비 1/2 감면 ↳ KOSHA 18001 및 KOSHA-MS 인증업무 처리 규칙 별표5 참조</li> </ul>	참여 다음 연도	○	○
모든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OSHA-MS 컨설팅비용 우선지원(50인 미만) ↳ KOSHA-MS 컨설팅비용 지원업무 처리지침 제7조 참조</li> </ul>	수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OSHA-MS 실태심사비 면제</li> </ul>	참여 당해 및 다음 연도 (참여승인 전까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클린사업 보조 및 산재예방시설 용자 우선지원</li> </ul>	참여 당해 및 다음 연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여신혜택 부여(300인 미만 중소기업) -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용 100% 적용 - 보증요율 0.2%p 감면</li> </ul>	참여 다음 연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평가우대 - 기술성 평가 점수 우대 및 지원한도 상향 (60억 → 100억)</li> </ul>	참여 다음 연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보증 혜택(중소중견기업) -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 한도 1.5배 우대 및 보증(합)료 20% 할인</li> </ul>	참여 다음 연도	○	○

## 프로그램 추진 우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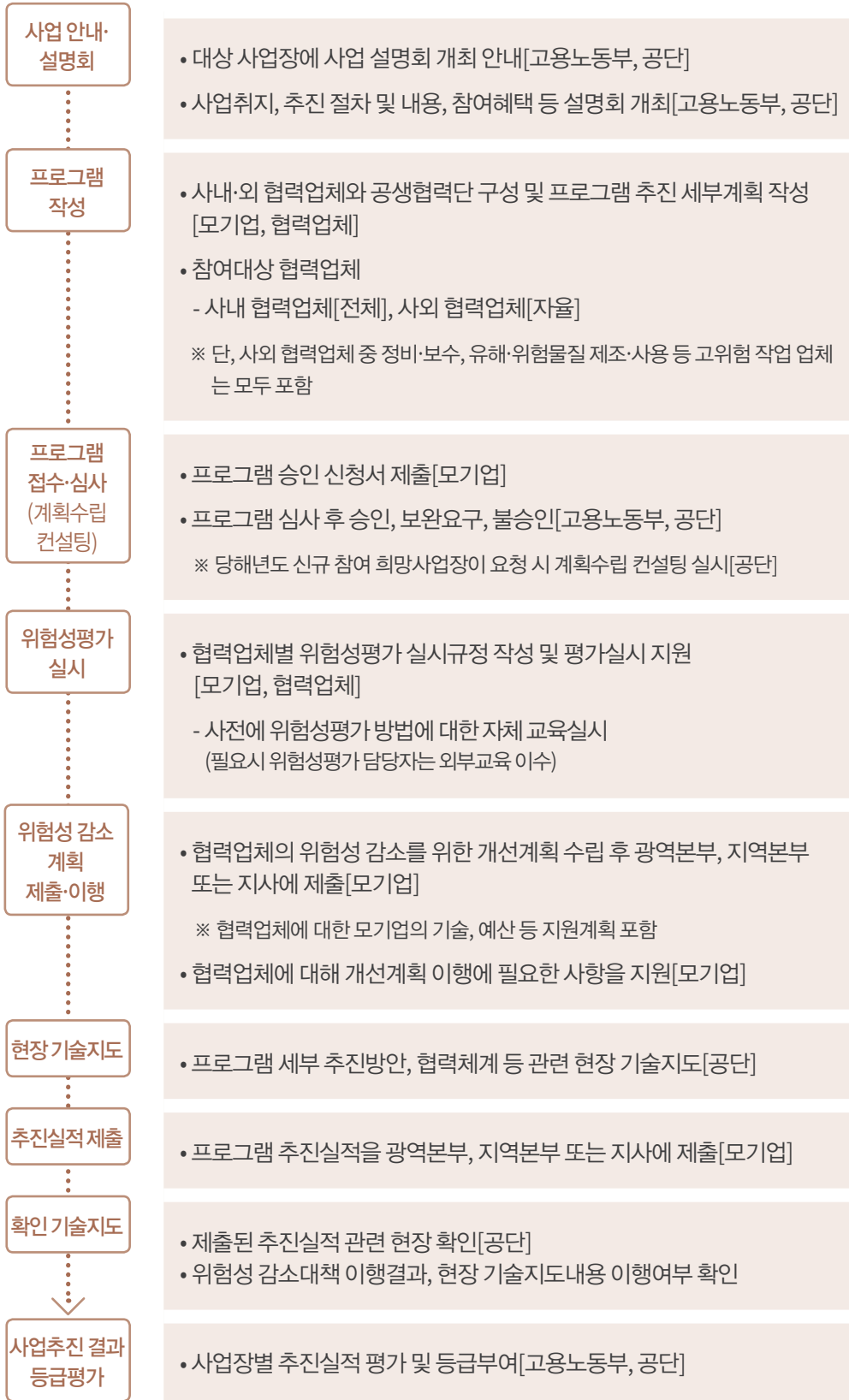
### • 프로그램 참여사업장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7월중)

※ 세부 일정이 확정되면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및 사업장에 안내 예정

### • 우수사례 홈페이지 게시

-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 사업소개 → 산업안전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 추진사례

## 프로그램 추진 절차 및 내용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



### 모기업 부문

- 공생협력 추진의지
  - 1 공생협력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모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 수준

### 모기업 · 협력업체 부문

-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 1 공생협력 운영 방침·규정의 수립·전달·확인 체계
  - 2 공생협력단 구성 및 활동의 적정성
  - 3 공생협력을 위한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 1 위험성평가 계획
  - 2 위험성평가 이행
  - 2 위험성평가 이행 확인
  - 4 지속적 개선
  - 5 기록 및 관리
-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결과 평가
  - 1 계획대비 이행도
  - 2 도급관련 법규의 준수 정도
  - 3 산업현장 사고사망 재해 감축 노력 정도
  - 4 만족도 조사 및 환류
    - 4 -1. 협력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 4 -2. 협력업체 개선요구 사항 반영 수준

### 협력업체 부문

- 협력업체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발생 수준
  - 1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 2 협력업체 재해발생 수준
    - 2 -1. 모기업 대비 협력업체 재해수준
    - 2 -2. 참여 협력업체의 당해년도 사고사망 발생 여부 (감점)

※ 평가지표는 3월 의견수렴 후 최종 확정하여 공지 예정